

##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0. 2. 12.(금) 11: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이병기 위 원  
형태근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나. 국민의례
  - 다. 개회선언
  -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 마. 전차회의록 확인

## 바. 의결사항

### 1) 「보편적 의무 손실 보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2010-08-025)

-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09. 12. 30 전원 회의에 보고되고 '10. 2. 9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보편적 의무 손실 보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 ○ 주요 내용

- 최소 필요한 적정 공중전화대수를 산정하여 손실 보전  
·'09. 11월 현재 97,101대에서 17%(16,826대) 감소한 80,275대를 적정 공중전화 대수로 산정하여 손실보전  
※ 연도별 적정공중전화 대수는 '08년 94,275대 '09년 87,275대, '10년 80,275대  
·산정기준은 인구 기준으로는 광역시/시 인구 3천명당 1대, 도농복합시/군 인구 5백명당 1대, 거리 기준으로는 광역시/시/도농복합시/군 모두 2Km당 1대, 59,654대를 산정(특수지역은 20,621대를 산정)  
※ 총 80,275대 = 59,654대 + 20,621대
- 콜렉트콜 수입 및 낙전수입을 공중전화 수입에 포함
- 번호를 기준으로 회선수를 산정하는 등 시내전화 손실 보전금 산정기준을 명확화
- 이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손실보전금 산정대상 시내 공중전화 대수의 개념 정의(제6조제5호), 손실 보전금 산정방식(제9조제5호)을 신규로 규정

### 2) 「800/900MHz 및 2.1GHz 주파수 할당계획」에 관한 건 (2010-08-026)

- 오남석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800/900MHz 및 2.1GHz 주파수 할당계획」과 그에 따른 주파수 할당 공고 및 할당 대가 산정·부과에 관한 고시 제정을 의결함  
※ 제5차 위원회('10. 2. 3) 보고 이후, 토론회와 전자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침

#### ○ 주요 내용

##### ① 할당대상 주파수

- 800/900MHz대역 : 839~849MHz(10MHz)/884~894MHz(10MHz)  
905~915MHz(10MHz)/950~960MHz(10MHz)
- 2.1GHz대역 : 1920~1940MHz(20MHz)/2110~2130MHz(20MHz) 중 각 10MHz

② 할당에 관한 사항

할당대역	할당방법	이용기간	사업자당 할당대역폭
800/900MHz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식	2011. 7. 1 ~ 2021. 6. 30 (10년)	20MHz
2.1GHz		할당절차 완료 후 즉시 ~ '16. 12. 3까지	

③ 기술방식

- 3G이상의 기술방식(IMT-2000 또는 IMT-Advanced)으로 하되, 할당 공고 당시 이미 이동통신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현재 이동통신 역무에서 운용 중인 전송방식과 다른 신규 전송방식(현재 CDMA/WCDMA → OFDMA 등)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4G 기술방식은 승인요건에 무관하게 활용 가능
  - ※ 승인요건 : (i) WiBro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WiBro 허가조건 미이행 관련 의결 사항('09. 10. 30)에 따라 WiBro 투자를 성실히 이행시
  - (ii) 비WiBro 사업자는 기존대역에서 주파수 부족시

④ 할당대가

- 전과법시행령 제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1.4%를 일시에 부과하고 실제매출액의 1.6%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 6,092억원)
  - ※ 800/900MHz대역 각 2,514억원, 2.1GHz대역 1,064억원

⑤ 주파수할당 신청자격

- 800/900MHz대역은 800MHz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

⑥ 망 구축의무 및 제재 조치

- **(망 구축의무)** 동일대역 기존 전국사업자의 평균 기지국 수를 근거로 산정한 기지국수를 기준으로, 3년이내 15%, 5년이내 30% 이상의 기지국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토록 하고

< 기지국 설치기준 >

구분	기준 기지국수	3년이내 15%이상	5년이내 30%이상
800/900MHz대역	5,400국	810국	1,620국
2.1GHz대역	7,400국	1,110국	2,220국

·신청법인이 제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준수 및 매년 이행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제출토록 의무를 부여함

- (제재조치) 할당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후, 할당조건 미이행시에는 전과법령에 따라 주파수 할당의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예정

⑦ 할당신청 및 대역배정

- (할당신청) 할당신청 기한은 '10. 3. 31까지이며 IMT-2000 사업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도 필요
- (대역배정) 800/900MHz대역은 대역구분 없이 하나의 신청대역으로 하며, 주파수할당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얻은 총점의 고득점 법인 순으로 할당대역 선택권을 부여. 단, 동점의 경우 합의 또는 추첨으로 정함

⑧ 할당 심사기준

-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 3개 심사사항 및 12개 심사항목으로 구성

심사사항	심사항목	배점	계
①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①-1 네트워크 구축계획의 적정성	10	50
	①-2 소요설비 투자계획의 적정성	10	
	①-3 녹색방송통신 기술계획의 우수성	5	
	①-4 트래픽 수용 및 전파간섭대책의 우수성	5	
	①-5 서비스제공계획의 적정성	10	
	①-6 통신시장의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10	
② 재정적 능력	②-1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7	25
	②-2 재무구조(계량) -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신용등급	12	
	②-3 심사사항 ①, ③과 자금조달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6	
③ 기술적 능력	③-1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	7	25
	③-2 서비스 품질목표의 우수성	8	
	③-3 운용보전계획, 장애시 대비계획의 우수성	5	
	③-4 해당업무 관련 기술인력 확보 계획의 우수성	5	
<b>총계</b>		<b>100</b>	<b>100</b>

- (할당대상 선정) 심사사항별 100점 만점 기준 각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총점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3) (주)KT 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회계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 조치에 관한 건 (2010-08-027~047)

○ 차양신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08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회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주)KT 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함

※ 대상사업자 : '08년말 기준 149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편적 의무손실 분담 및 연구개발 출연금 부과 대상인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

○ 주요 내용

① 위반내용 : 21개 사업자가 총 299건의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

- (자산) 초고속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자산을 시내전화서비스용으로 분류 등 84건
- (수익)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매출액 등 영업수익 항목 누락 등 23건
- (비용) IMT-2000서비스(3G)에서 발생한 비용을 셀룰러서비스(2G)로 분류 등 147건
- (기타) 서식작성 오류 및 단순집계 오류 등 45건

②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 위반사업자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과태료 처분

※ 각사별 과태료 금액: **1,000만원**(SKT), **700만원**(KT, (구)KTF), **300만원**(LGT, SKB, (구)LG데이콤, (구)LG파워콤, SK네트웍스, (구)삼성네트웍스, 온세텔레콤, SK텔링크, 드림라인, KT파워텔,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드림씨티방송, 씨앤엠,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한빛방송, 티브로드기남방송, 티브로드ABC방송)

## 사. 보고사항

### 1) USIM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신용협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USIM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음

○ 주요 내용

#### ① USIM을 활용한 이동통신사 전환 가입

- **(현황)** 이동통신사는 자기가 판매한 단말기의 IMEI 정보만 관리하면서, IMEI 정보가 없는 타사 단말기에 대해서는 통화를 차단

※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3G 단말기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

- **(문제점)** 이로 인해 이용자가 “기존 3G 단말기를 타 이동통신사로 전환하여 사용(USIM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IMEI 정보 전송(기존 이동통신사 → 신규 가입 이동통신사)을 신청해야 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용자의 경우 IMEI 전송이 최대 2개월간 제한되는 등의 불편 발생

- **(개선방안)** 이동통신사의 IMEI 관리가 단말기 분실·도난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으므로, IMEI를 관리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우선 이동통신사간에 IMEI를 공유하도록 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와 IMEI 전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 없이 USIM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

#### ② USIM 단독판매 및 개통

- **(현황 및 문제점)**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없이는 USIM 판매 및 개통을 기피하고 있어, ‘USIM Lock 해제’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

- **(개선방안)**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USIM 단독판매 및 개통을 거부하는 행위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USIM 구매 및 개통을 제약하는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 실시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USIM이 별도로 판매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개선하고, 이용약관·가입신청서에 동 내용을 명시하도록 조치

### ③ USIM 홍보

- **(현황 및 문제점)** 이용자는 USIM 용도, 필요성 및 USIM을 이용한 이동통신사 전환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동통신사는 홍보 노력이 부족  
·특히, 단말기(USIM 포함) 분실·도난 대응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분실·도난으로 인한 타인의 통화료 부담 피해 사례 발생
- **(개선방안)** 통신사업자연합회, 이동통신사 등이 협력하여 USIM 용도·필요성 등과 관련한 홍보 및 관련 홍보책자 제작·배포를 추진하고  
·이동통신사는 가입신청서 및 USIM칩 등에 USIM·단말기 비밀번호 설정 방법, 분실·도난시 대처 방법 등을 명시하고, USIM 관련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영업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속

### ④ USIM의 가격

- **(현황 및 문제점)** 이동통신사에서는 가입에 필요한 제반 사항 처리를 위해 가입비(SKT 39,600원, KT 24,000원, LGT 30,000원)를 받고 있으나,  
·가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USIM도 7,000 ~ 11,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어, 가입 관련 비용의 이중부담 문제 제기
- **(개선방안)** 단기적으로는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USIM 판매가격이 USIM 공급 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USIM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USIM 가격과 가입비를 통합하여 가입에 필요한 적정 비용의 합계를 산정함으로써 USIM 가격과 가입비를 同비용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 2) 수도권정비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 KBS 수원센터의 제작지원 센터 건물을 연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하는 것을 차기 수도권 정비 위원회(2/4분기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음
- ※ KBS의 수원센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청사로 분류되므로, 수도권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용도변경 가능

아.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일정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기로 함

**6. 폐 회 (12:05)**